

이 보도자료는 2019. 9. 26.(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내용 중 일부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2019. 9. 26.(목)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청

공보담당관 대전지검 자장검사 강지식

전화 : 042-470-4302 / 팩스 : 042-470-4226

자료문의 : 특허범죄조사부장실

전화 : 042-470-4308 / 팩스 : 042-470-4226

주책임자 : 특허범죄조사부장 박하영

특허청 자장 전세창

전화 : 042-481-3573 / 팩스 : 042-472-3465

자료문의 :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전화 : 042-481-5085 / 팩스 : 042-472-3465

주책임자 :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 서창대

제 목

한류편승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해산 - 「신종짜퉁」에 대한 검찰·특허청 공동대응

- 대전지검(검사장 장영수)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 8. 6. 및 27. 한류에 편승하여 소위 '신종 짜퉁' 사업을 하여 온 외국기업 두 곳의 국내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
 - 기존의 짜퉁: 상표까지 그대로 베낀 가품을 제조, 국내·외에 판매
 - 신종 짜퉁: 국내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
- ※ K-뷰티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 유명화장품 기업들의 알로에겔, 마스크팩, 클렌징폼 등과 같은 대표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베끼고,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제품명을 기재하며, 매장 간판에 'KOREA'를 표시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 외국기업들은 한류 인기지역인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저품질의 상품을 제조한 후 1/2~1/3 가격으로 판매하여 불법 수익을 챙겨왔고, 국내 기업은 그로 인해 수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피해기업들은 언어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지 대응을 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외국 정부기관과 협업으로 '제품허위표기를 이유로 한 단속 등 실효적인 제재' 조치 가능
- 앞으로도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조치할 예정임

I 추진 배경

-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지역에서 한국 유명제품의 외관을 모방하고 한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발생
 - 해당 기업은 중국·동남아 등에서 2016년경부터 모방제품을 정품의 1/2~1/3 가격(ex.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000원 / 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000원)으로 판매하여 국내 피해기업들의 대(對) 중국, 대(對) 동남아 수출액이 급감
- 특히, 해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존재'로 인하여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한국 화장품 기업 전반의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 피해도 지속
 - 효능 있는 식물 추출물 등을 함유한 것처럼 도안을 베꼈으나, 실제로는 해당 추출물이 없는 등 한국 정품의 품질에 못미치는 제품이 대부분
- 특허청은 국내 화장품 6개 기업들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외 정부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국내 피해기업들의 현지 개별대응을 조력하였으나,
 - 외국 정부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불투명하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지 단속에 미온적이어서 한계
-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류편승기업의 침해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정보를 대전지검에 제공
- 검찰은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피의자들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한류편승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

※ 붙임1 '공동대응 진행 경과' 참조

※ 붙임2 '특허청, 한류편승기업 확산에 따른 범정부 대응 경과' 참조

II

해산명령청구 사건 진행 경과 및 결과

1. 피청구인

-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 2014. 11. 3. 설립
-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 2015. 11. 3. 설립

※ 붙임3 '외국 A사, B사 현황' 참조

2. 청구 이유 요지

○ 피청구인 A 주식회사

- 2014. 11. 3. 법인 설립 이후 2018. 6.까지 사무실 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월 11만 원의 이용료만 납부해 옴
- 2018. 7.경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였으나 직원 및 집기가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정관에 정한 '잡화 도·소매 등'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음
- 아울러, A 주식회사는 외국 A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위해 국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부정경쟁행위 등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

○ 피청구인 B 주식회사

- 2015. 11. 3. 법인 설립 이후 2018. 10.까지 사무실 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월 11만 원의 이용료만 납부해 오다가, 2018. 10. 이후 이용료 미납으로 계약 자동 해지된 상태
- 현재까지 정관에 정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없음
- 아울러, B 주식회사도 외국 B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위해 국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부정경쟁행위 등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

3.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 사유 해당 여부

○ 상법 제176조 제1항 해산명령 사유 및 청구의 주체

▶ 해산명령 사유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 청구의 주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

※ 붙임4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 제도 개관' 참조

○ 법인 해산명령 사유 해당 여부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지 여부

- 중국 A사, B사는 국내 유명 기업의 화장품 용기·포장을 모방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마치 한국에서 화장품이 생산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A, B 주식회사를 설립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B 주식회사는 각 국내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 및 국내 직원도 전혀 없는 등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함
- 유일한 자산인 자본금 1억 원을 각 법인 설립 후 컨설팅 비용,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외국으로 빼내감
- 특히, A 주식회사는 2018. 7.경 국내에서 '한류에 편승한 짝퉁 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사무실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빈 사무실에 책상·의자 5개만 놓여 있을 뿐 집기는 전혀 없었음

※ 붙임5 'A, B 주식회사 사무실 현장사진' 참조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A, B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행위), ▲동법 제2조 제1호 마.목(출처지 오인야기행위), ▲동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성과 도용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재산권 침해) 등 법령에 위반

< 침해사례 예시 >



※ 붙임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저작권법 관련 규정 및 자료' 참조

4. 법원의 법인해산 결정

○ 결정('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 2019. 8. 6. 서울중앙지법, A 주식회사 해산결정
- 2019. 8. 27. 서울남부지법, B 주식회사 해산결정

○ 결정 요지

- A, B 주식회사는 각 설립 이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등의 외국에서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저작권법위반행위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용되고 있고,
-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수입 및 지출 등의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 법인의 각 대표자는 위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로서,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느바,
- ① 설립목적의 불법성, ② 1년 이내 영업 未개시 또는 영업 休止, ③ 이사에 의한 법령위반행위의 해산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 법원은 검찰 및 특허청의 주장사실을 전부 인용

III

사건의 의미

1. 검찰과 유관 정부기관간 적극적 공조로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

- 그 동안 우리나라 피해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경고장 등으로 개별 대응 하였으나, 외국계 기업이 침해를 중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모방품을 만들어 침해를 계속하여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대전지검·특허청의 공조로 본건 해산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현재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계속 판매 중인 모방품 포장에 국내 법인을 상표권자(Brand Owner)로 표기한 부분은 '제품 허위표기'에 해당
 - 이에 따라 현지 당국에 해당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응시 '제품회수' 등의 행정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법인 해산은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

2. 감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사명 성실히 수행

-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는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부당경쟁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자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감사의 역할을 수행

3. 기타 효과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제품의 고객흡인력을 외국기업이 부당하게 편취 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산업 보호

- 건전한 한류가 해외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류 확산에 이바지
-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가짜 한류상품으로 인해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IV

향후 계획

1. 특허청

-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단속 중이거나 단속 예정인 외국 정부기관 등과 A, B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결정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현지 대응을 강화
- 그 밖의 ASEAN, 중동지역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IP-DESK 및 KOTRA 현지 무역관, 해외저작권센터와 연계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법률검토 등 지속적으로 추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검찰청,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등 ‘범정부 대응 TF’를 상시 가동하여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

2. 대전지방검찰청

- 향후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 업정 대응하고,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 ☐